

R&D지원

바이오

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

기존 치료제나 의료기술의 치료 한계성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혁신형 新의료 기술인 재생의료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

관련부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: 대·중견·중소기업

전문기관 :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

■ 지원대상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
 - ※ 단 기업인 경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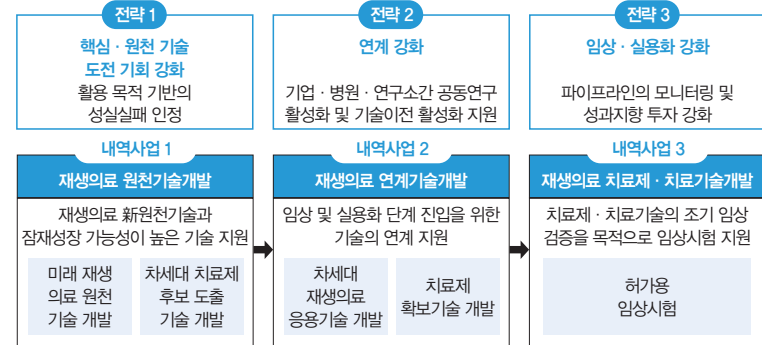
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(정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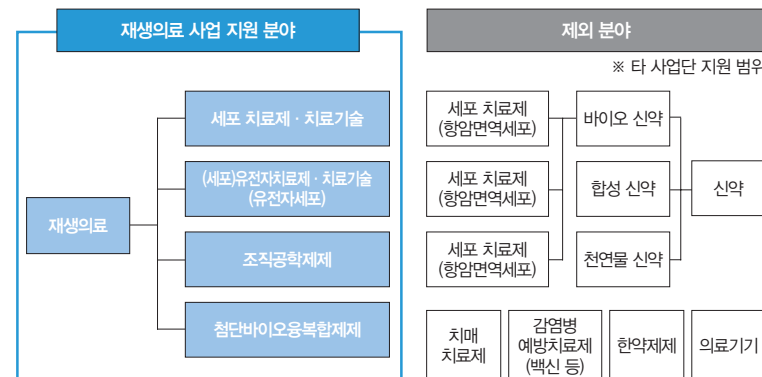
3. “연구개발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
 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 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 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 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■ 지원내용

-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, 과제 기술성숙도(TRL) 단계를 유기적·지속적으로 상위 이동(Right Shift)시키기 위한 지원 구조



- (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) 재생의료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확장성을 고려한 新기술 개발 지원
 - ※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상위 단계로 연계지원
- (재생의료 연계기술 개발) 원천기술 개발 영역에서 발굴한 新기술 검증 목적의 응용기술 및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 지원
 - ※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허가용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연구 연계지원
- (재생의료 치료제·치료기술 개발) 현재 임상연구(TRL 6~7) 중인 질환 타겟 치료제의 임상 1상·2상 완료 지원



■ 지원규모

■ (예산규모) 5,955억원 / '21~'30년(총 10년)

※ 정부지원: 5,423.1억원, 민간: 532.4억원

[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]

내역사업	연구개발과제명	연간 지원규모	지원기간	선정예정 과제수
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	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	477백만원 이내	5년 이내 (1단계 3년+2단계 2년)	6개
	재생의료 후보물질 도출	477백만원 이내	3년 이내	6개
재생의료 연계기술 개발	재생의료 융합기술 개발	477백만원 이내	3년 이내	4개
	재생의료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	300~500백만원 이내	4년 이내 (1단계 3년+2단계 1년)	26개
재생의료 치료제·치료기술 개발	재생의료 허가용 임상시험	700백만원 이내	3년 이내	3개
총계				45개

■ 문의처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(iris.go.kr)
-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R&D기획관리본부 (☎ 02-6263-3077, 3078, 3090)

R&D지원

바이오

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

범부처 차원의 'R&D→임상·인허가·제품화' 전주기지원으로 ①글로벌
제품 개발, ②미래의료 선도, ③의료 복지 구현, ④사업화 역량 강화 등
달성

관련부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

지원대상 : 대·중견·중소기업 **전문기관** :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

■ 지원대상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

※ 단 기업의 경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
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
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(정의)

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 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
 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 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 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